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가인정 심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9.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1. 학습과정 평가인정 의의

-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함.
-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인정함.

<근거법령 및 규정>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5.8>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9.5.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

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9.5.8>

제14조의2(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인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명칭 2. 교육시설 및 설비 3. 교육목표 4.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 5. 학습자 수 6. 교원·강사 7. 교재 및 교수방법 8. 학습자 관리 방안 9. 그 밖에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상세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진흥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8.11]

※평생교육법 제 23조 및 평생교육시행령 제14조의2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영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강좌 및 과정 3.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4.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한 과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2항

2. 평가인정 신청 가능 기관

□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 소재, 아래 해당 기관

-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 2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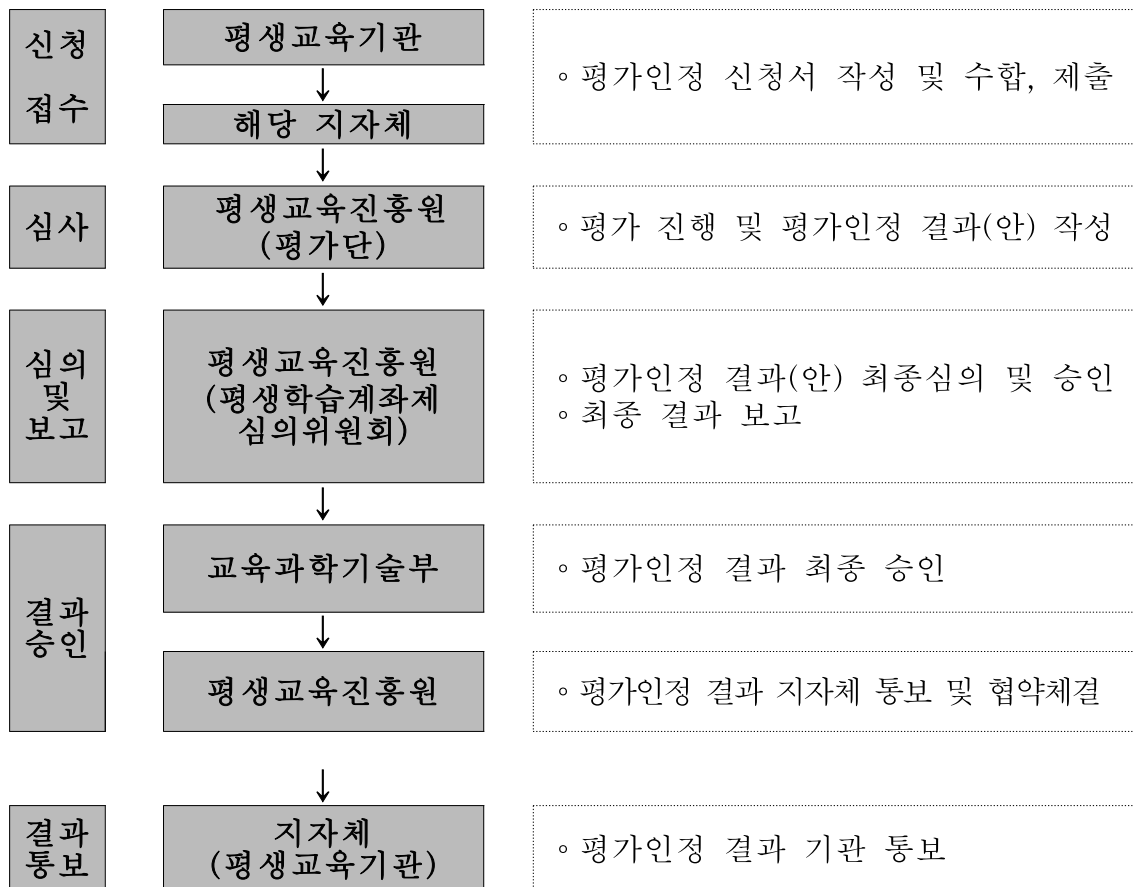
3.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

- 제2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등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완료학습과정)에 한하여 실시함.

※ 2010년에는 “완료학습과정”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설예정학습과정”은 2011년 이후 평가 실시 예정임.

4. 평가인정 절차

- 평가인정은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심사 → 심의 및 보고 → 결과 승인 → 협약체결의 순서로 진행됨.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자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 제출함. < 8. 추후 조치사항 참조>

5. 평가인정 기준

항 목		평가기준
1	학습과정의 명칭	1-1. 명칭의 포괄성 및 명확성
		1-2. 교육 내용과의 유기적 연계성
2	교육시설 및 설비	2-1. 과정 운영 및 학습자 수용에 적절한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실 보유 여부
		2-2. 학습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3	교육목표	3-1.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4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	4-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4-2.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4-3. 교육 운영기간의 적절성
5	학습자 수	5-1. 교원·강사 1인당 학생 수의 적절성
6	교원·강사	6-1. 교원·강사 및 위촉기준(학력·자격, 전문성 등)의 적절성
7	교재 및 교수방법	7-1. 교재 선정의 적절성
		7-2. 교수방법의 적절성
8	학습자 관리 방안	8-1. 학습자 관리의 적절성
		8-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의 적절성
9	그 밖에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9-1. 학습자 지원시설 및 지원체제 확보 여부
		9-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여부
		9-3. 프로그램 운영 재정의 적절성
합계		

- 각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 평가받아야 함.
- 평가항목의 일부만 충족할 경우와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인정”으로 판정하고 다음 평가인정 시기에 재평가함.
- ※ “예비인정” 대상은 전체 9개의 평가항목 중 2/3(6항목) 이상에서 각 배점 대비 70% 이상으로 평가된 학습과정을 말함.
- [2.교육시설 및 설비]의 배점인 [가/부]에서 “부”일 경우 다른 모든 평가항목이 충족되었더라도 평가인정에서 탈락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6. 평가인정 일정(안)

- 설명회 : 2010. 4. 21(수)
- 서류 접수 : 2010. 5. 3(월). ~ 5. 14(금)
- 서류 심사 : 2010. 5. 24(월) ~ 5. 28(금)
- 최종 심의 : 2010. 6. 4(금)
- 결과 통보 : 2010. 6. 21(월)

※ 설명회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7.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붙임1】** ※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공문 1부.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5부를 제출하며, 전체 신청서류를 수록한 파일(CD 또는 USB) 제출
 - 제출기한: 2010. 5. 3(월) ~ 14(금)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평생교육기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 우편발송은 5월 14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제출은 5월 14일까지 접수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우)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평생교육진흥원 6층

평생교육정책본부 학습계좌팀 학습과정 평가인정 담당자(☎ 02-3780-9770~4)

8. 추후 조치사항

- 학습과정 평가인정 이후,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되는 학습과정의 추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근거 규정>

제3장 협약의 체결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진흥원장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학습자·이수자 정보 공유 방안 3. 학습과정 결과보고서(다만, 완료학습과정에 한한다.) 4. 학습과정 운영계획서(다만, 진행 및 예정학습과정에 한한다.)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협약을 체결한 평생교육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의 협약사항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평생교육기관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평가인정이 취소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과정 운영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②진흥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생교육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진흥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인정의 취소

제18조(지도·감독) ①진흥원장은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점검 결과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정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운영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인정의 취소)** ①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기 위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제4장

가. 협약 체결

구분		내용
협약	협약의 체결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 체결을 통해 이수자 DB를 관리하며 학습과정 결과보고서 및 학습계획서를 제출한다.
	협약의 변경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체없이 평생교육기관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평가인정 취소

구분		내용
평가 인정 취소	지도·감독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명령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취소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해당 법에 따라 평가인정취소에 해당될 경우 이를 위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붙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양식 1부. 끝.